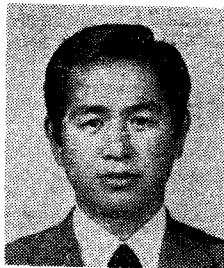


企圖特輯解說

技術革新時代의 國際通商과 知的 所有權 制度(3)



庾麟鳳

<國際特許研修院 教授部長>

■ 目 次 ■

- I. 世界經濟의 依存關係와
 知的所有權의 重要性
 - 1. 知的所有權과 世界經濟의
 依存關係
 - 2. 美國의 知的所有權 政策
 - 3. 發展途上國에 技術移轉과
 知的所有權制度
 - 4. 先進國間 技術移轉과
 知的所有權制度
 - 5. 知的所有權 制度에 關한
 國際調整

- II. 技術革新 技術移轉時代에서의
 知的所有權制度
 - 1. 基本方向
 - 2. 日本의 基本立場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號>

다) WIPO 및 GATT에서의 調整

○ 知的所有權制度에 關한 國際調整은 知的所有權의 權利를 明確히 하자 하는 面과, 確定된 權利를 通商貿易의 擴大에 寄與되는 形態로 적용하기 위한 國際 Rule作成이라는 2가지 面이 있다.

○ 現在 前者에 關해서는 WIPO, 後者에 關해서는 GATT를 中心으로 检討가 進行되고 있다.

지금까지 新技術分野의 取扱과 國際調整의 多大한 公信을 하여온 WIPO에서는 主로 法律의 侧面에서 知的所有權의 權利를 明確化하기 위한 检討·조정을 行하고, 제도적용에 關해서는 基本적으로는 各國 國內法에 맡기는 立場을 取하고 있다.

○ 그러나 世界經濟의 一體化, 統合화가 進行됨에 따라 通商貿易의 擴大라는 觀點에서 權利取得節次와 保護水準이라는 운용면에 關해서도 國제적으로 最小限度의 Rule을 調整해둘 必要가 있다는 認識이 先進國을 中心으로 높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先進國, 特히 美國은 이 問題가 通商貿易上의 重要한 問題인 것임으로 이를 檢討하는 場으로서는 自由貿易을 推進키 위한 國제적조건 정비역할을 一貫해서 擔當하고 있고, 紛爭處理機構를 가지고 있는 GATT가 適合하다고 主張했다.

○ 知的所有權問題가 GATT에서 上程된 것은 1978年 Tokyo-Round에서 美國과 EC가 不正商品團束強化를 위한 國際 Rule의 必要性을 指摘한 것이 最初이다.

○ 不正商品貿易에 關해서는, 其後 GATT에서 取扱하기로 檢討되어 왔으나, 發展途上國은 이 問題는 本來 WIPO에서 取扱되어야 될 것이고, 貿易問題로서의 Priority가 낮은點, 新貿易障壁을 쌓을 염려가 있다는 理由로 GATT의 場에서 知的所有權問題를 檢討하는 것에 對해서 反對하여 先進國과 심한 對立을 하였다.

○ 그러나 1986年 9月, Uruguay에서 開催된 GATT 각료회의에서 先進國과 發展途上國의 協議進展이 있어 不正商品을 포함한 知的所有權制度에 關해서 GATT의 場에서 協議하기로 理解되어 앞으로 數年間에 걸쳐 交渉을 進行하기로 했다.

한편 WIPO에서도 出願者名義表示·特許請求方式·特許期間, 製法特許品目, 多項目出願을 포함한 관連특허·一括出願項目에 對한 國際的調整을 1989年 내지 1990년까지에 完了한다는 Schedule에 따라 作業을 進行하고 있다.

○ 知的所有權問題가 WIPO調整의 場을 넘어서, 國際通商問題로서 드디어 GATT의 場에서도 取扱하게 된 意義는 큰 것이며, 日本으로서도 國際會議에서 적극적 공헌을 할 必要가 있다.

○ 國際的 Rule設定을 함에 있어서 各國의 制度를 Harmonization한다함은 各國經濟狀況이 다름을 참작해서 國際通商貿易을 원활히 擴大키 위해 必要한 basic的原則을 作成한다는 것이다.

○ 日本으로서는 이려한 意味에서의 知的所有權制度에 關한 國際的 Harmonization을 推進키 위해 先進國과 發展途上國과의 仲介役割을 다해야 할 것이다.

先端技術의 導入國으로부터 出發해서 現在에는 기술혁신의 Frontier位置에 있는 日本이라면 技術開發者的立場과 後發者の立場을 함께 理解하고, 調整해감이可能하며, 世界經濟發展을 為해서 日本이 적극적으로 공헌해감이 기대되는 것이다.

II. 技術革新 技術移轉時代에서의 知的所有權制度

<1> 基本方向

○ 知的所有權制度는 지금까지 產業政策의 觀點에서 工業製品의 權利保護를 해온 特許權과 文化政策의 觀點에서 主로 藝術作品을 保護해온 著作權을 축으로 構築되어 왔다.

○ 그러나 新技術혁신 진전과 經濟의 Soft化 더욱이 世界經濟의 상호의존관계 高潮가 가져다준 “新知의 生產物의 出現” “Soft部分比重의 增大, 技術 Life Cycle의 短縮化에 依한 Risk增大” “企業活動의 Globalization에 依한 世界經濟의 一體化” 란 要因을 背景으로 해서, 知의 生產物을 높이 評價함과 同時に 開發者的利益保護와 公共利益의 균형을 이룬 新知의 所有權制度에 關한 國際的 Rule構築必要성이 생겼다.

○ 그렇지만 知的所有權制度는 一國의 產業政策 및 通商政策과 密接한 關係가 徒래에 比하여 더 긴밀하게 되었고, 國際的 Rule設定에 있어서도 各國의 合意를 얻기가 약간 어려운 實情에 이르렀다. 특히 美國, EC, 發展途上國間에는 이 問題에 對한 思考方向에 있어서 意見差異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이 중 美國은 약간 急進的으로 保護強化를 하는듯하고, 美國內部에서도 知的所有權保護方向에 對해서

產業과 社會에 對한 영향檢討가 充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意見등 여러가지 意見이 있다.

○ 또 發展途上國족을 보면 발전단계가 크게 서로 다른 國家들이 混在하고 있어, 知的所有權의 國際的 Rule設定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發展途上國의 實情을 考慮해야 한다.

○ 日本은 경제력이 높음과 더불어, 知的所有權을 例에 依한 國際狀況속에서 明確한 意思表示를 하여야 할 立場에 있다.

이 問題에 對해서도 기술혁신과 기술이전의潮流를 Global한 觀點에서 展望하고 自由競爭과 自由貿易을維持하고, 世界經濟의健全한 發展에 貢獻케 할 知的所有權에 關한 國際的 Rule를 提示해갈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고로해서 이 時點에서 日本이 取해야 할 基本立場은 다음에 記述하는 바와같은 思考에 입각한 것이어야 할것이다.

<2> 日本의 基本立場

가) 新技術特徵에 따른 知的所有權保護

○ 新技術혁신 진전에 수반하여 지금까지의 知的所有權構造로는 對應할수 없는 事情이 많은 分野에서 생기고 있다. 例를 들면 新技術革新은 多大한 開發費를 要하는 反面, 모방이 쉬운 特徵을 가진 知의 生產物을 生產하고 있다.

이때문에 產業經濟를健全하게維持發展시켜가기 위해서는 知의 生產物의 價值를 適切히 評價해서 保護해갈 必要가 점점 重要하게 되었다.

그러나 新技術革新이 가져다준 知의 生產物은 Life cycle이 빠르고 그 產業 및 社會에의 영향은 時間과 더불어 變하는 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技術進展狀況에 따라서 新技術特徵에 맞는 知的所有權保護 方向에 對하여 總合的인 檢討가 必要하다.

나) 權利設定時 產業과 社會에의 영향고려

知的所有權은 自然法의 權利는 아니고 知의 生產活動에 Incentive를 주고, 知의 生產物의 社會에의 流通을促進함에 依한 產業 및 社會의健全한 發展을 實現하기 위해서必要하다는 要請에 依해서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新知의 生產物의 法의 保護를 함에는 그 技術과 知識이 產業과 社會에 끼칠 영향에 對해서充分히 배려를 함과 더불어, 이미 實施되고 있는 法의 保護에 對해서도 산업과 사회변천에 따라 항상 修正 또는 拡

本的改革이必要함을 엿어서는 아니되겠다.

○ 權利是 設定함에는 技術內容公開에 依한 技術의普及과 進歩에 의한 貢獻의 報償으로서의 權利保護임을認識하고 產業과 社會全體의 健全한 發展을 念頭에 둔政策思考가 重要하다.

특히 日本의 現行著作權法에는 Computer Program을 取扱함에 있어 產業과 社會에의 영향배려를 어느程度하였는지, 아마充分하지 않고 權利範圍가 不明確해서 運用面에서 結果의으로 權利保護가 너무 強해지거나 不足을지, 問題點이 指摘되고 있다.

다) 獨占禁止法의 活用, 標準化에 依한 競爭促進

○ 例를들면 現在 신속히 進展되고 있는 Computer Network화 함에 있어, Network를 機能化시키는 通信Protocol(規約)은 通常 Program으로 表現되기 때문에, 通信Protocol의 開發者가 權利主張은 行한때는 시장환경은 경쟁제한적으로 되기 쉽다.

○ 따라서 獨占禁止法活用에 依해서 權利濫用을 排除하는 外에 이와같은 基幹의 技術中 公共財로서의 性格을 가진 것에는 開發者の 投資가 一定期間內에 充分히 回收됨을 保證하는 適正한 對價下에서 人類共通의 財產으로 取扱해서, 國際의로 標準化로 推進, 누구도 情報에 接할 수 있고, 自由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Framework造成을 할이 重要하다. 그러한 意味에서 現在 ISO 및 CCITT에서 推進하고 있는 Computer Network의 Protocol의 國際의 標準化作業(OSI)을 한층 적극적으로 추진할必要가 있다.

라) 國際的 調整과 發展途上國의 배려

○ 新技術革新進展과 企業活動의 Globalization에 따라 世界市場融合一體化가 進行되고 있어 知的所有權에 關한 國際의 Rule의 必要性이 높아지고 있다.

○ 1986年 9月의 Uruguay의 GATT자료회의에서 新Round 檢討項目으로서 知的所有權問題가 檢討되어 通商貿易을 擴大한다는 觀點에서 知的所有權制度에 關한 國際의 Rule의 調整을 하게 된것은 극히 意味깊은 일이고, 日本으로서도 적극적 공헌을 할必要가 있다.

○ 그러나 知的所有權制度의 정비는 發展途上國의 발전단계에 別異한 Incentive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술발전단계를 고려하여 發展途上國의 經濟發展도 實現시키는 適正한 Handicap을 取한 New Frame work를 目標로 해야할 것이다. 例를들면 발전단계에서의 留保事項의 容認등 特殊적 方案을 도입함도 一案이 될것이다. <略>

新刊案内

發明과 特許의 世界

저자: 特許辯護士 David Pressman著

特許廳 電氣課長 鄭 懷 讀譯

규격: 590면

가격: 15,000원

知的 所有 權 法

저자: 宋 永 植 外 2人

규격: 국판 959면

가격: 18,000원

新 特 許 法

저자: 南 啓 繁 外 3人

규격: 국판 510면

가격: 8,300원

商 標 法 解 說

저자: 金 寬 衡(本會研修部長)

규격: 국판 446면

가격: 9,500원

工 業 所 有 權 法

저자: 李 秀 雄

규격: 국판 748면

가격: 12,000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자료판매센터
(568-8263)로 문의 바랍니다.